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7월 13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이 원 계)

□ 제안이유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04. 10. 22, 법률 7235호)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래시장의 불법, 불량 비·햇빛 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대상으로 정함.(안 제6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재래시장중 12개소는 승인되었으며, 5개소는 아니나 일반 골목길의 점포와의 형평성이 문제시 되고있음.	○ 재래시장에서 현재 비, 햇빛가리개를 설치한 시장에 대한 양성화를 시켜 주고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임.
○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골목길 점포에 대한 감면혜택은 없는지 ?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불가함.
○ 재래시장에 차량의 통행과 보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행위에 대하여도 감면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재래시장을 통행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면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단속이 되어야 함.
○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	○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며, 사도는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님.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04호
의결 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출년월일 : 2005. 6. 30.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04. 10. 22, 법률 7235호)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래시장의 불법, 불량 비·햇빛 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료 면제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대상으로 정함.
(안 제6조)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를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감면

제1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조중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부천시 사무 위임 조례”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중 “노점,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u>도로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u>도로점용료</u>(이하 “점용료”라 한다)·<u>부당이익금</u> 및 <u>수수료</u>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u>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 「<u>도로법</u>」 ----- 「<u>도로법시행령</u>」 ----- ----- ----- <u>변상금</u> ----- ----- -----.</p> <p>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u>」 <u>제2조제1항에</u> ----- <u>해당하는</u> <u>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u> <u>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u> <u>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p> <p>② ----- -----.</p> <p>1. <u>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u> <u>면제</u></p>

현행	개정안
<p>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p> <p>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감면한다.</p> <p>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p>	<p>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p> <p>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감면</p>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7. <u>노점, 자동판매기</u> ,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7. <u>자동판매기</u> , -- ----- -----	----- -----
	<u>노점, 자동판매기</u> , 상품진열대		<u>자동판매기</u> , -----